

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29.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4. 17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1차 조례특위(2001.4.17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신영선)

가. 제 안 이 유

-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**전·월세에 상승 억제코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**하려는 것임.

나. 주 요 골 자

- 공급주택 부속토지 감면범위 확대(**60제곱미터 ⇒ 85제곱평방미터**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 할 수 있고 이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**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㎡를 85㎡로 확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임.**

○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부합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1부